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자세와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업·전문가·정부의 협업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선진 허가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환경부는 낮은 자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보다 정교한 환경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김효정 |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T/F 팀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영 Warwick대 국제관계학 석사, 영 Cambridge대 환경영정책학 석사

환경부 정책총괄과, 교통환경과, 뉴미디어 홍보팀장 등 역임

tel. 044-201-6721 | xiaozeon@gmail.com

머리말

우리는 법과 제도의 지대한 영향 아래 산다. 제도에 의해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이 규정되는 속성이 강한 만큼, 시대 변화와 주변여건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반영하는 제도 설계 및 적용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자연과학에서 잘못된 가설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듯이 넓고 비과학적인 제도가 미래 발전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환경부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과학기술이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환경규제체계의 대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이유와 개선방향

우리나라는 1971년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으로 환경관리의 기틀을 다졌고, 1990년부터 대기, 수질 등 환경매체별로 분법화된 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재와 같은 인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허가제도가 그동안 매체별 오염물질 저감에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최초 허가제 도입 당시에 비해 급속하게 변화된 산업특성과 환경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다.

산업의 고도화로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10년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432.5백만톤, '98년 대비 60%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의 산업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은 노후화되어 국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허가제도는 환경매체별 종복적인 인허가로 인해 기업의 행정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통합적 측면에서의 환경관리와 오염물질 배출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종배출구(end of pipe)에서 배출허용기준만 준수하여 1회 허가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허가사항이 지속됨에 따라 신기술 적용,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율적인 기술개발, 시설투자 등 기업의 환경개선 노력을 유인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산업분화, 제조공정 다양화,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산업 시장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매체별 허가체계를 통합환경관리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내용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은 그간 유지되어 온 허가체계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협업·기술·정보 3대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사전배려의 원칙¹, 최상가용기법(BAT) 적용, 통합관리(integrated approach), 탄력성(flexibility), 정보공개(의견수렴) 등의 기본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BAT 정의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 Technology(기술) + The Way(기법)

- ▶ 산업 활동과정에서 오염물질 발생·배출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기술적으로 가장 적합한 기술 및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 발생원 관리기법·기술
- ▶ BAT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기술·기법 중 경제·기술·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최상의 기술이 아닌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기술·기법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시설을 수질, 대기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증복 관리하고 있는 9개 인허가 사항을 통합·간소화(1개의 허가증 발급)한다.

둘째, 획일적으로 설정된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대신해 BAT 수준을 바탕으로 업종·시설 특성,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한다.

셋째,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업종별 최상가용기법 기준서를 작성·제공하여 허가기관의 기술검토와 사업장 허가신청서 작성 등에 활용되도록 한다.

¹ 사전배려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환경파괴의 가능성에 대하여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원칙

최상가용기법 기준서(BREF) 정의

- ▶ (최상가용기법 기준서, BREF)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효율적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우수기술(공정기술, 방지기술), 최대 배출기준(Range), 환경관리시스템, 비점오염관리기법, 물질·에너지 회수 및 재이용 기술 등 전반적인 환경관리체계를 포함(BAT Reference)

넷째, 허가 이후 법령 개정,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인 허가 재검토(5~8년)를 실시한다.

다섯째, 전문기술검토기관을 두어 기술검토 절차를 의무화하고,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부족한 기술적 사항 지원 및 가동개시 신고시 시설확인 등을 실시한다.

여섯째, 통합허가 과정에 허가신청서 등에 대한 주민공개를 신설하고, 의무·처벌위주의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술진단 중심의 기업 자율관리 기반을 제공한다.

일곱째, 통합허가에 필요한 기술정보, 허가절차를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선택형 웹기반 서비스인 '환경기술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설명한 몇 가지 핵심사항을 근간으로 보다 정교하고 명확한 법률입안 작업을 통해 제도·체계를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계획

통합환경관리제 시행을 위한 통합법률(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4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4년부터 통합법률(안)에서 위임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하고, 업종별 BAT 기준서 작성, 환경기술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설계와 기반구축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2016년부터는 제도 시행 단계로서 대상 업종별로 BAT 기반의 통합허가제를 연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효율적 이행에 필요한 홍보, 교육훈련, 사업장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통합대상 업종 확대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일 것이다.

맺음말

지금은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자세와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업·전문가·정부의 협업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선진 허가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환경부는 낮은 자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보다 정교한 환경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환경선진국을 향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